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19 선고 2021가단1275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, 한아람

변 론 종 결 2021. 11. 5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9.

주 문

1. 피고 C은 원고에게 20,681,284원 및 그 중 11,282,050원에 대하여 2021. 4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 D와 피고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한 2019. 8. 5.자 증여계약을 20,681,2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3. 피고 D는 원고에게 20,681,284원 및 그 중 11,282,05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5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

부분의 1/10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한다.

6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, 2항 및 피고 D는 원고에게 20,681,284원 및 그 중 11,282,05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4. 3. 14. 피고 C과 대출금액 15,000,000원, 이자율 연 8%, 변제기 2017. 3. 18.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. 피고 C은 2017. 5. 17.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나, 그 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. 2021. 4. 12. 기준 잔여 대출원리금은 20,681,284원(= 원금 11,282,050원 + 이자 9,399,234원)이다. 위 대출거래약정에서 지연배상금율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 연 7%를,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이면 연 8%, 3개월 초과이면 연 9%를 더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.

나. 피고 C은 2019. 8. 5.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중 1/2 지분을 증여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, 피고 D는 2019. 8. 12. 위 지분에 관하여 2019. 8. 5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9. 8. 12. 접수 제119300호)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9. 5. 28. 근저당권자 E주식회사, 채무자 피고 C, 채권최고액 247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,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0. 5. 25. 말소되었고, 2013. 11. 1.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(후에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), 채권최고액 228,000,000원, 채무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,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1.

10 12. 말소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여금 20,681,284원 및 그 중 11,282,05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21. 4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7%(= 이자율 연 8% + 연체기간 3개월 초과시 적용되는 연 9%)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, 피고 D의 악의

1) 피고 C의 무자력

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C은 2017. 10. 12. 서울회생법원 2017개회73644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, 위 법원은 2017. 11. 2. 개시결정을 하였으며, 2018. 1. 29. 변제계획을 인가한 사실, 위 개인회생절차는 2021. 3. 30. 폐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,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.

2) 사해행위성립

가)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,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).

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은 피고 C의 유일한 재산인

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, 이를 피고 D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, 피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나) 이에 대하여 피고 D는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고, 피고 D는 선의였다고 주장한다.

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,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,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,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(대법원 2006. 9. 14.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).

을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들은 2003. 1. 11.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, 피고들은 2020. 5. 22. 재산분할 및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사실, 그 무렵 협의이혼을 신청하고, 2020. 9. 16.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한 사실이 인정된다.

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산분할 및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, 1년이 지나서야 협의이혼을 하였는바,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, 정당한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(설령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,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피고들은 혼인기간 중인 2013. 12. 24.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/2 지분씩 취득하였던 점, 피고들이 이혼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10,000,000원인 점, 위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353,706,459원인 점, 피고들은 이혼 당시 피고 D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하고, 피고

C이 피고 D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,200,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, 위 양육비의 합계는 51,600,000원인 점, 피고들의 혼인기간 등에 비추어 재산분할 비율은 각 50%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들이 이혼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의 가치는 178,146,77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, 피고들은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, 피고 C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피고 C이 피고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합계를 초과 하는 부분은 상당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다).

또한,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였으므로,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,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 D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

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E주식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,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피고 D가 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가액배상만 가능하다. 또한,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,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의 1/2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 D는 가액배상으로 위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,681,2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 D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20,681,284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1,282,05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[원고는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, 가액배상의무는

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, 또한 민법 소정의 이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(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),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]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노미정

별 지

1 동 의 건 물 의 표 시

서울특별시 관악구 동

[도로명주소]

서울특별시 관악구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:

구 조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: 제 15 층 호 59.99 m²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: 1.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 65046.9 m²

대지권의 종류: 1 소유권 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: 65046.9분의 20.41

[이상, 피신청인 () 소유]

